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나7097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나709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776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배년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민

변론 종결 2019. 5. 22.

판결 선고 2019. 7.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776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03,588원과 그 중 75,317,867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금융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추가로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본인확인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보증계약의 체결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계약당사자가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피고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주채무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증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대출계약 체결의 경우와 같이 금융회사가 추가적인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일승

판사신한미

판사민성철